「평창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○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6년 9월 4일, 평창군수 제출

○ 회부일자: 2026년 9월 14일 회부

○ 상정일자: 제31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(2026년 9월 14일 상정・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안전교통과장)

가. 제안이유

❍ 공영버스터미널의 대상을 평창공영버스터미널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, 향후 군의 공영버스터미널 운영 필요가 발생할 경우 즉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제명을 변경하여 조례의 적용 대상 확대: 제명

- (기존) 평창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
- (개정) 평창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❍ 공영버스터미널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삭제: 안 제2조

- 공영버스터미널의 명칭을 평창공영버스터미널로, 위치를 평창읍 백오1길 3 일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 삭제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경숙)

❍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평창공영버스터미널이라는 특정 시설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다른 지역에 공영버스터미널을 설치·운영할 경우 별도의 조례 개정이 필요한 문제를 해소하고, 군에서 공영버스터미널 운영 필요가 발생할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.

❍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49조에서는 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 시장·군수가 직접 터미널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관리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❍ 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제명을 ‘평창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’로 변경하고, 특정 터미널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한 제2조를 삭제하는 한편, 터미널의 명칭을 ‘평창군 공영버스터미널’로 정비하는 것으로, 공영터미널의 설치·운영 여

건 변화에 대응하고 조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회의록 참조」

5. 토론 요지: 「회의록 참조」

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